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95

발의연월일: 2020. 12. 31.

발 의 자:김교흥・김승원・문진석

박성준 • 윤관석 • 이학영

유영찬·김성주·김정호

문정복 · 허종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 지급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 머물러 다 단계판매보다 사행성 문제가 적은 판매 형태로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오늘날 380,000여 명이 종사하며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 단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음.

그러나 최근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방문 등의 대면 영업이 매우 어려워져 후원방문판매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대부분 자기자본이 없는 서민들인 후원방문판매 종사자들은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였음.

비대면(온라인) 영업방식이 허용되는 다단계판매와 무점포 판매방식에서 차이가 없는 후원방문판매도 종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후원방문종사자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함.

이에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서 방문의 방법 외에 전자거래의 방법 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방식에 의한 영업활동 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법률 제 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전단 중 "제1호"를 "제1호(방문을 하는 방법 외에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하는 방법 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후원방문판매"란 <u>제1호</u> 및	7제1호(방문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	을 하는 방법 외에 「전자문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	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	<u>를 포함한다)</u>
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	
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	
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